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유은혜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개정(법률 제18637호, 2021. 12. 28. 공포, 2022. 6. 29. 시행)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대한 편의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대한 편의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(안 제32조의2 신설)

- 1)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
- 2)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으로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, 몸짓,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
- 3)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화면 장면,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

나. 대학의 장은 위에서 정한 편의를 영상물에 포함하여 제작하거나, 지원인력 배치, 보조기기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, 폐쇄자막은 문자통역 및 속기로 대체 가능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2 (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대한 편의의 내용) ① 법 제31조제4항에서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’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
 2.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으로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, 몸짓,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
 3.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화면 장면,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
-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의 편의를 영상물에 포함하여 제작하거나 지원인력 배치, 보조기기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, 제1항제1호의 폐쇄자막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국어로 변환하는 문자 통역 및 속기로 대체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32조의2 (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대한 편의의 내용) ① <u>법 제31조제4항에서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’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1.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.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으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, 몸짓,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3.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화면 장면,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의 편의를 영상물에 포함하여 제작하거나 지원인력 배치, 보조기기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, 제1항 제1호의 폐쇄자막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국어로 변환하는 문자통역 및 속기로 대체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	
연락처	(044) 203-6312